

#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7월 일

발 의 자 : 임희도 의원

## 1. 제안이유

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남시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,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하남시 관내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는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## 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없음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##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남시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의 특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,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(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남시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의 특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,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